



[2018. 9. 13.] [2018 - 559 , 2018. 9. 13.,]

() 044 - 201 - 3264

1

1 () 「 」 10

2 () 「 」 (" ") 8

3 ()

1. " " ()

2. " " ,

3. " " 2

4. " "

5. " " (

)

6. " " 가

7. " "

8. " "

9. " "

10. " "

1

「 가 」 (" "

) 「 」 (" ")

2

4 ()

, (" ")
「 가
」 18 (" ")가 .

가

1. .

2.

1 . ,

1.

가 :

2. :

5 ()

1 .

가 가

1 3 .

1

(" ") .

6 ()

2 .

1

7 ()

2 .

, 가 , 가
가 가 , 가
가 .

8 ()

2 .

12 7 「 가
」 .
2 .

3

9 ()

(" ")

가

)

(

" ")

1.

가. 3 (가가) .

. 3 (가가) .

. 3 (가가) .

2. 19 8

가

3.

4. 20

5.

4

4

4 30

5

1. 가
2. , 가가 「 」, 「 가가 」
- 3.

5

6

- 1.
- 2.
3. 12 3 1

2

5

30

10 () 12 3 1

14

12 3 5

14

1

, 15 1

11 (가) 14

가

1. 14 1
- 2.

14 2

가

가

12 ()

1 9 2 9

4

13 ()

1. : 3 31 (,
3)

2. : 3

3. 1 2 : 가 3
1 가

1.

2.

3.

1

2

14 ()

(精算)

13 1

1

2

9 1

9 2

25 5 가

가 가

13 1

3

9

2 9

1.

2. 가

1

5

15 ()

, 13 1

14 1

1. 9 3 2

2. (

11 1 2 4 6 8

)

3. 10

1 28 3

1 3

1 3

2 2

16 ()

15 (10

)

() 1

10

가

6

17 ()

18 ()

2017 7 31 3 (3 12 31)

< 2018 - 559 ,2018. 9. 13.>

1 ()

2 () 4 3 2 1 3

3 () 9 3 , 1 3

4 () 1 2

()

5 ()

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·부담 기준 (제4조제3항 관련)

| 1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| 2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| 3.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|
|--|---|--|
| <p>가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: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</p> <p>나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: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</p> <p>다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: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</p> <p>라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: 총 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.</p> <p>마. 그 밖의 경우: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</p> | <p>가.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</p> <p>나.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(단,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.)</p> <p>다.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: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(단,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한 경우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.)</p> | <p>가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</p> <p>나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,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</p> |

※ 비교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2. "중견기업"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.
3. "대기업"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.
4.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·부담 기준을 적용한다.
5.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(제6조제1항 관련)

| 비 목 | 세 목 | 사용 용도 | 계상기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
| 직 접 비 | 인 건 비 |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| <p>1. 소속기관(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)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</p> <p>비고: “해당 과제 참여율”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,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.</p> <p>2.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.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.</p> <p>3.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,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.</p> <p>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가.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</p> |

| | | |
|--------|--|--|
| | | <p>인건비</p> <p>나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</p> <p>다.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(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)</p> <p>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</p> |
| 학생 인건비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(이하 "출연연구기관 등"이라 한다)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·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.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. |
| 연구장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연구기간(협약기간) 내를 원칙으로 하되, 국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비 · 재 료 비 | <p>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(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,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)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(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, 건축비, 부지 매입·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·설계·건설·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포함)</p> <p>2. 시약(試藥)·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·관리비</p> <p>3. 시제품(試製品)·시작품(試作品)·시험설비 제작경비(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)</p> | <p>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 |
| 연 구 활 동 비 | <p>1.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(체재비를 포함한다)</p> <p>2.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</p> <p>3.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숙박료, 기술도입비 등</p> <p>4.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</p> <p>5.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</p> | <p>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,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.</p> |

| | | |
|---------|--|--|
| | 6. 특허정보 조사·분석, 원천·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(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는 제외한다) | |
| 연구과제추진비 | 1.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 2.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 등 3.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) 4.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| 1.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이 경우 제13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. 2.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,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. 3.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을 말한다. |
| 연구수당 |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|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·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한다)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. |
| 위탁연구개발 |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| 직접비, 간접비로 계상하되,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|

| 간 | 비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간 | 간 | 1. 인력지원비 | 1.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 |
| 접 | 접 | 가. 지원인력 인건비: 연구개발에 필 | 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|
| 비 | 비 | 요한 지원인력(장비운영, 연구 | 제외한다)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|
| | | 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 |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. |
| | | 함한다)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| 2.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|
| | |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|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 |
| | | 인력(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 | 발비는 제외한다)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 |
| | | 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 | 상한다. |
| | | 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| 3. 영리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|
| | |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의 |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)에 |
| | | 인건비 | 대해서는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|
| | | 나. 연구개발능률성과급: 연구기관 |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)의 5퍼센트 범 |
| | | (주관연구기관, 협동연구기관, | 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. 다 |
| | | 공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) | 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|
| | | 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| 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|
| | |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 | 할 수 있다. |
| | | 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| 가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|
| | | 2. 연구지원비 | 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구개 |
| | | 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: 연구개발에 | 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|
| | |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|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|
| | | 나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: 사 | 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|
| | | 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 | 4.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|
| | | 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 |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. |
| | | 입경비 | 5.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 |
| | | 다. 연구실 안전관리비: 연구개발과 | 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|
| | | 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 |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. |
| | | 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| 6.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|
| | |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 |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|
| | | 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| 금액으로 계상한다. |
| | |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| 7.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|
| | |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는 경 |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|
| | | 비 |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|
| | | 라. 연구보안관리비: 연구개발과제 | 거쳐 집행해야 한다. |

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및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(任置)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

마. 연구윤리활동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

바. 연구개발준비금: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(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(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

사.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: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

| | | |
|--|--|--|
| | <p>계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 <p>아.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,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</p> <p>3. 성과활용지원비</p> <p>가. 과학문화활동비: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</p> <p>나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국내·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(인증을 포함한다) 활동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</p> <p>다.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: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, 학교기업, 실험실공장,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</p> | |
|--|--|--|

비고

1.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초과

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,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,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대학, 특정연구기관(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) 및 학연합동 석사·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.
3.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·관리·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.
4.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5.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.

【별표 3】

인건비 지급 세부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1. “지식서비스 분야”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○ “지식서비스 분야”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5-31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(종목)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.

| 업태(종목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3201. 인테리어 디자인업 |
| 73202. 제품 디자인업 |
| 73203. 시각 디자인업 |
| 73209. 기타 전문 디자인업 |
| 72111.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|
| 72112.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|
| 72121.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|
| 72122.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|
| 72129.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|
| 58221.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58222.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62010.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|
| 72911.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|
| 72919. 기타 기술시험, 검사 및 분석업 |
| 71531. 경영컨설팅업 |

2. 별표 2.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“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”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별표 2.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“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”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-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
(단,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%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.)
-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고용계약서 등)를 제출한 연구인력
 - 고용계약서 : 고용계약서에 과제명 기입, 참여율 100%
-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(기업 포함)